



인도네시아 Tax Info 2023 년 2 월

국세기본법에 대한 신규 시행령

2022 년 12 월 12 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령 2011 년 74 호(PP-74)가 더 이상 조세행정의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따라 정부령 2022 년 50 호(PP-50)를 공표했으며 해당 정부령은 수차례 개정된 국세기본법 1983 년 제 6 호(KUP 법률)의 개정세법에 관한 법률 2021 년 7 호(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PP 법률)) ([Tax Info October 2021](#) 및 [Tax Alert November 2021](#) 참고)에 의해 도입된 변경 사항을 수용한다. 2022 년 12 월 12 일부터 발효된 PP-50 은 KUP 법률과 관련된 PP-74 및 정부령 2021 년 9 호의 일부 조항을 대체하며 KUP 법률의 신규 시행령이 된다 ([Tax Info March 2021](#) 참고).

In this issue:

1. [New implementing regulation for general provisions and procedures for taxation](#)

Customs Focus:

2.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scheme](#)

PP-50 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PP-74 의 조항과 유사하지만 HPP 법률에 의해 도입된 KUP 법률의 변경 사항에 맞춰 일부 세부 사항이 업데이트되거나 개선되었다. 본 호에서 PP-50 에 도입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된다.

상호 합의 절차(MAP)에 대한 확실성 증가

MAP 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 형식의 국제적 접근 방식이다.

HPP 법률은 KUP 법률에 MAP 가 국내 분쟁 해결, 즉 이의신청/조세소송과 병행해서 진행되거나 또는 세액 확정 통지서(Surat Ketetapan Pajak (SKP)) 결정청구/취소 신청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됨.

MAP 협상이 합의되는 경우 관련 당국이 합의된 절차를 실행할 수 있음을 상호 통보하고 납세자가 관련 사건의 진행 중인 분쟁 해결 시도를 조정하거나 철회한 후 관련 관할 당국이 상호 합의한 조세 처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된다.

MAP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분쟁 해결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이행된다.

MAP 결정에 따른 과납 세금에 대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미납부 세액 공제 후 납세자에게 환급하며 이자는 없다.

탄소세

PP-50 은 HPP 법률에 의해 도입된 탄소세 관련 시행령 역할을 하며 재무부 장관(MoF)의 추가 규정 발표에 의해 시행 예정인 탄소세 관리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추가됨.

탄소세 조세에 있어 납세자란 HPP 법률 제 13 조에 따른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탄소납세자) 또는 탄소세 징수자로 정의된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탄소세 신고서가 있다:

- 탄소 납세자가 역년 종료 후 네 번째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간 탄소세 신고서(특정 예외 포함); 또한
- 회계 기간 종료 후 20 일 이내 탄소세 징수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기 탄소세 신고서

탄소세 신고서 지연 제출시 벌금이 부과됨.

또한 PP-50 은 탄소납세자와 탄소세 징수자가 탄소 배출 및/또는 탄소 함유 제품 판매를 초래하는 활동에 대한 거래기록(pencatatan)을 유지하고 탄소세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를 10 년 동안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Changes by PP-50 are required to accommodate latest tax administrative requirements introduced by HPP Law.

Carbon tax is added to PP-50 as the preparation for tax administration that is planned to take into effect after the MoF issues the implementing regulation.

원시증빙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중 조세범죄 징후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유예하고 조세범죄 원시증빙조사(pemeriksaan bukti permulaan (bukper audit))를 실시한다. Bukper 조사는 조세수사를 통해 중단되거나 조세수사로 진행될 수 있다.

PP-50 의거 아래의 경우 중단된 세무조사가 재개된다:

- 아래 사유로 인한 bukper 조사 중단:
 - 조세범죄의 원시증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촉발 사건은 조세범죄가 아님; 또는
 - 조사 대상 개인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 아래 사유로 인한 조세수사 중단:
 - 증거 불충분;
 - 촉발 사건은 조세 범죄가 아님; 또는
 - 동일 사건 중복 기소 불가(nebis in idem) 또는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
- 납세자를 모든 법적 혐의로부터 면제하는 조세 범죄에 대한 조세 법원 판결이 있으며 국세청(DGT)이 해당 판결서 사본을 수령한 경우; 또는
- Bukper 조사 또는 조세수사로 인해 세금이 과납된 경우.

또한 PP-50 은 아래의 경우 중단된 세무조사가 정지됨을 규정함:

- KUP 법률 제 8 조 3 항에 의거 납세자가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자진신고서 제출을 통해 bukper 조사가 중단된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한 조세수사 중단:
 - 납세자가 KUP 법률 제 44A 조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경우; 또는
 - 납세자 또는 용의자가 KUP 법률 44B 조 1 항에 의거 국세 손실 분을 납부하는 경우;
- KUP 법률 제 40 조에 근거 조세범죄의 공소시효 10 년이 만료되어 bukper 조사 또는 조세수사가 중단된 경우; 또는
- 모든 법적 혐의에 대해 납세자를 무죄로 판결하는 법원판결문 외에 조세 범죄에 대한 조세 법원 판결이 있으며 국세청(DGT)이 해당 판결문 사본을 수령한 경우

세액 통지서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요청

국세청(직권) 또는 납세자(요청하는 경우)는:

- 특정 조건에 따른 가산세 경정 또는 취소;
- SKP 오류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 벌금등 고지서(Surat Tagihan Pajak(STP)) 경정 또는 취소; 또는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Surat Pemberitahuan Hasil Pemeriksaan) 또는 최종 협의(Closing Conference) 없이 발급된 SKP 의 취소.

PP-50 에 의거 납세자는 상기 (iv)에 따른 SKP 취소를 1 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기 (i) ~ (iii)에 근거한 경정 또는 취소는 최대 2 회까지 할 수 있음. 납세자가 해당 SKP 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면 (ii)에 의거 SKP 오류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신청 기회가

Although the opportunity to request for a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an incorrect SKP is forfeited once the taxpayer withdraws the objection, it still can request for a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the associated tax penalty.

상실된다. 단, 납세자는 이의신청 철회 후 관련 가산세 경정 또는 취소는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 행정소송, 대법원 재심청구시 가산세

PP-50 은 형식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이의신청이 철회되거나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0%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은 SKP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해야 함. 마찬가지로, 형식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조세법원이 조세소송 신청을 거부한 경우 적용 가능한 가산세는 30%로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이의신청 결정 일자 참조하여 납부해야 함. 한편, 조세소송에 패소(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했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한 경우 60%의 가산세가 적용됨.

또한 본 규정은 HPP 법률에 의거 대법원 재심청구 결과에 의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소송신청서 제출전 과세된 세액 대비 미납 금액의 60%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DGT 는 대법원 재심 판결후 2 년 이내에 벌금 등 징수를 위한 STP 를 발행해야 한다.

과납세액 환급

과세 당국의 과다납부세액확정 통지서 발행으로 인한 과납세액은 환급 신청 또는 과다납부세액확정 통지서 발행 1 개월 이내에 환급되어야 함.(조건에 따라 다름). 과세 당국이 1 개월 이내에 과납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이자의 형태로 보상해야 한다.

이는 이전 KUP 법률에 규정되었지만 PP-74 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PP-50 에 이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 권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함.

납세자의 납세자번호

정부는 개인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납세자번호 단일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인구 및 주민 등록 총국(Direktorat Jenderal Kependudukan dan Pencatatan Sipil)과 DGT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2022 년 7 월 MoF 는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한 통합의 초기 준비로 규정 No. 112/PMK.03/2022 를 발표했다 ([Tax Info July 2022](#) 참고).

상기 사항이 PP-50 에 포함된 것은 정부의 강한 통합 의도를 보여줌.

세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가족

PP-50 에 따라 특정 가족 구성원은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 배우자 또는 2 촌 이하의 혈족이나 혼인 관계(예: 손주 또는 조부모)가 포함된다.

If an objection is withdrawn or rejected due to failure to fulfill the formal requirements, the 30% penalty is not applicable since the objection is considered never filed.

소송 판결에 따른 SKP 또는 이의 결정 통지서 재발급

PP-50 에 따른 세금 환급 요청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로 인해 SKP 가 수정되는 경우 DGT 가 SKP 를 발급하는 12 개월 기간은 SKP 가 발급된 날부터 DGT 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연기된다.

마찬가지로 형식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 거부에 대한 소송판결이 있는 경우 DGT 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2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DGT 의 거절 결정이 송부된 때부터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은 유예 기간으로 간주됨.

전자인증

조세행정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납세 의무 이행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제공한다. 과세당국이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DGT 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통지서는 하드카피 형식으로 발행된 통지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과세당국의 전자 통지서 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F 규정에 의해 규정되며 그 절차는 PP-50 이 발효된 후 5 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함.

경과규정

아래 표는 PP-50 에 따른 일부 경과규정 요약 임:

주요 사항	적용된 경과규정
SKP 가 2021 년 10 월 29 일 이후 발행 (HPP 법률이 발효된 날짜)	가산세 계산이 2021 년 10 월 29 일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 가산세는 2021 년 10 월 29 일에서 31 일 사이에 적용되는 재무부가 매월 발행하는 기준 이자율(Suku Bunga Acuan(SBA))을 사용하여 계산됨. 가산세 계산이 2021 년 10 월 29 일부터 시작되는 경우 벌금등 계산일에 적용되는 SBA 를 사용하여 계산됨.
2021 년 10 월 29 일 이후 발행된 부가세 및 과소납부 원천징수세 관련 SKP	가산세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계산됨.
2021 년 10 월 29 일부터 납세자가 이미 납세유예 또는 분납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납부된 세금	미납된 세금은 STP 를 통해 징수됨.
2021 년 10 월 29 일 또는 그 이후에 발행된 추가납부세액 확정 조세불복 통지서 (이의신청, 항소 또는 대법원 재심청구 관련)	가산세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과됨.
2021 년 10 월 29 일 이전에 정부에 세입 손실에 대한 정보 요청을 제출했지만 조사 종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조세수사 종료 요청	가산세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과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진행되는 MAP 협상	PP-74 를 따름.

주요 사항	적용된 경과규정
전자인증제도 시행 전에 과세당국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조세 결정서	결정서는 DGT 의 전자 시스템에서 발행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유효함.
PP-74 에 따른 납세자 대리인 지정	대리인 지정은 KUP 법률 제 44E 조 2 항 e 에 따른 시행령이 발행될 때까지 유효함.

맺음 말

PP-50 은 광범위한 조세행정 조항 및 절차에 대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며 납세자는 신규 규정을 숙지하고 납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운영 규정에 명시된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한다.

관세 포커스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RCEP)

재무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따라 수입품의 수입 관세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 No. 209/PMK.04/2022 를 발표했으며 본 규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국제 무역 협력을 이행하고 관세 서비스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

PMK-209 allows importers to get preferential tariffs in the form of RCEP agreement, as an option.

PMK-209 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RCEP 제도에 참여하는 국가

PMK-209 는 아세안 10 개국 외에 아시아의 5 개국(호주, 일본,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뉴질랜드)도 RCEP 제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관세의 설명

자유 무역 협정 제도와 달리 RCEP 제도는 차별관세, 즉 RCEP 국가(RCEP 원산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특혜 관세가 있으며 이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 국가가 수출국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임.

RCEP 의 국가에 대한 수입관세 결정

RCEP 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별 수입 관세 금액은 아래 규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1. ASEAN 국가의 경우 221/PMK.010/2022;
2. 호주의 경우 222/PMK.010/2022;
3. 대한민국의 경우 223/PMK.010/2022;
4.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224/PMK.010/2022;
5. 일본의 경우 225/PMK.010/2022;
6. 뉴질랜드의 경우 226/PMK.010/2022.

PMK-209 는 2023 년 1 월 2 일부터 발효된다.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M&A and Tax

Technology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Business Tax

Budi Prasongko

bprasongko@deloitte.com

Business Tax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Business Tax

Muslimin Damanhuri

mdamanhuri@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